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 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 발/간/사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7년 8월 출범하여 2023년 현재 3기 2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구호아래 시민의 권리보호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행정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며 민원인과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청취,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만의 귀를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시민옴부즈만에서 수행한 활동내역과 성과를 담은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옴부즈만의 민원처리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 관계자 여러분과 민원처리에 적극 동참해 주신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여수시 신년화두는 일신연풍(日新年豊)으로 나날이 새롭게 해서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희 시민옴부즈만도 시민의 행복과 풍요의 지속을 위해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김기채 · 김양곤



# 목 차

## CONTENTS

### I.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03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05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07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09

### II.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 13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25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 35

### III. 주요 처리사례

- 1. 의견표명 ..... 41
- 2. 심의안내 ..... 63
- 3. 기각 ..... 66
- 4. 각하 ..... 78

### IV. 부록

- 1. 여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87
- 2. 여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93





# I

## 시민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 이 단어의 기원은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대표자·변호인·후견인’이라는 뜻으로,
- 현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의미

## 가 도입배경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핀란드·프랑스·영국·호주 등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1994년 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자율적·자주적 해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를 통해 옴부즈만의 제도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여수시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 하고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2017년 8월부터 2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운영근거

---

- 「지방자치법」 제116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다 추진경과

---

- 2016. 10. 0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016. 12. 3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7. 04. 07.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7. 08. 01. 제1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18. 02. 13. 2017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2. 12. 2018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19. 08. 01. 제2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0. 02. 25. 2019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2. 26. 2020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021. 08. 10.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021. 08. 10.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21. 09. 15. 제3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출범
- 2022. 02. 15. 2021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2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가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신분 : 2명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근무형태 : 주 4일 근무
- 운영방식 : 옴부즈만 독립적 직무수행
- 주요임무
  -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감사 의뢰
  -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 나 시민옴부즈만 관할

-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
- 여수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여수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기관

#### 민원처리 예외 대상(시행규칙 제7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른 화해·일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소개

<p><b>제3기 (현재)</b></p> <p>2021.9.15. ~ 2023.9.14.</p>	 	<p><b>김기채</b>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여수시 건설교통국장</li> </ul> <p><b>김양곤</b>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현대자동차 여수·순천·광양 지점장</li> <li>■ 前) 여수시 문화해설사(역사문화)</li> </ul>
<p><b>제2기</b></p> <p>2019.8.1. ~ 2021.7.31.</p>	 	<p><b>임채성</b>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장</li> <li>■ 前) 여수시 과장(노인장애인과, 감사담당관 등)</li> </ul> <p><b>장애신</b>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교육지원청 교육장(여수, 곡성)</li> <li>■ 前) 학교장(여수고, 여수여고, 울촌중)</li> </ul>
<p><b>제1기</b></p> <p>2017.8.1. ~ 2019.7.31.</p>	 	<p><b>최봉춘</b>   대표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여수시 국장(기획관광, 경영기획)</li> <li>■ 前) 여수시 감사담당관</li> </ul> <p><b>곽종철</b>   시민옴부즈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여수농협 지점장</li> <li>■ 前) 여수농협 상무(감사, 법무)</li> </ul>

### 시민옴부즈만의 자격(부패방지권익위법 제33조)

- 대학 또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경력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 3 시민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 가 주요기능

#### □ 행정통제 기능

- 옴부즈만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공공행정 기관간, 이해관계 집단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옴부즈만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
-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수행

####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깨뜨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만 특성인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 계층의 권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옴부즈만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 나 시민옴부즈만 직무 및 권한

- 시민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여수시장 및 여수시의회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시장 및 시의회에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 옴부즈만 조치(결정) 유형 |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각하 또는 이첩** : 각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첩하는 경우

## 4 고충민원 처리절차





# II

## 시민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 시민옴부즈만 활동
3. 시민옴부즈만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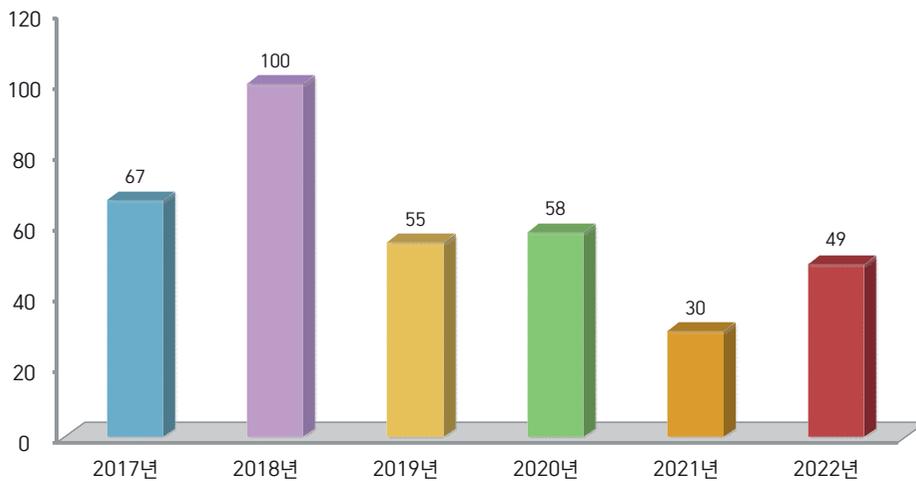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가 총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1일 출범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총 359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함.

[2017년~2022년 시민옴부즈만 연도별 처리결과 현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59	67	100	55	58	30	49



이 중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은 116건으로 시정권고 26건, 의견표명 24건, 합의 3건, 심의안내 7건, 기각 42건, 각하 12건, 추진중 2건이며, 종결처리 민원은 243건으로 이첩 55건, 취하 11건, 상담완료 177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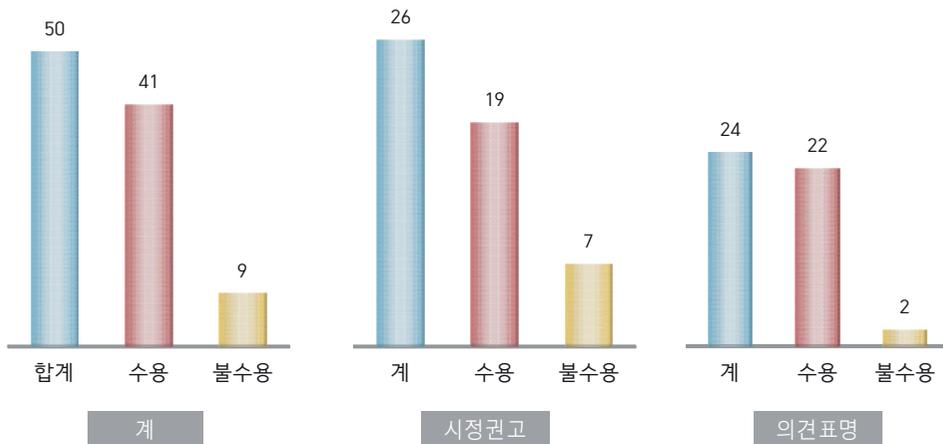
[2017년~2022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16건)							종결처리(243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359	26	24	3	7	42	13	1	55	11	177

시민옴부즈만에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한 민원은 총 48건으로, 이 중 피신청인이 수용한 민원은 39건임.

[2017년~2022년 시민옴부즈만 처리결과 수용 현황]

결정사항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계	50	26	24
수용	41	19	22
불수용	9	7	2



옴부즈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총 수용률은 82%로, 시정권고 민원은 26건 중 19건이 수용되어 73%의 수용률을, 의견표명 민원은 24건 중 전체 22건 수용되어 92%의 수용률을 기록함.

## 나 2022년 민원처리 내역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22년 한 해 동안 직접조사 민원 16건과 종결처리 민원 33건을 합하여 총 49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함.

### [2022년 시민옴부즈만 민원 처리결과 현황]

계	직접조사(16건)						종결처리(33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기각	각하	추진중	이첩	취하	상담완료
49	-	6	2	4	3	1	5	1	27

### □ 시민옴부즈만 직접조사 처리 내역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1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공아파트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모(기초주거급여대상자)와 함께 실제 거주(LH00주공아파트)하였으나 모의 사망으로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으로 실제 거주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고, 기초주거급여대상 등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li> <li>- 기초주거급여대상자의 영구임대주택 업무권한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관할)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관할 이외의 기관 소관으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따라 각하 결정</li> </ul> </li> </ul>	완료 (각하)
2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조법으로 조상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임00 자손과 신청인 이00 조상들이 같은 번지(00리 62)에서 같은 시기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정보증인이 주장하는 임00, 임00는 00리 251번지에 살았음.(제적등본)</li> <li>- 보증인 박00이 주장하는 임00 형의 손자(임00)가 박00(사망)</li> </ul> </li> </ul>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p>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것은 계약서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박00의 자 박00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지번착오라는 사유로 취하하여 신빙성 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결요구건은 신청인과 임00 집안의 소유권 관계는 자료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하고, 또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li> </ul>	
3	김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면 00리 산156번지 토지면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례에 따르면 토지면적 감소는 면적 등록 시 착오로 많은 면적이 등록된 경우로써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이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li> <li>- 이 감소된 면적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이 없는 인근 토지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li> <li>-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당 토지는 지적 불부합 지구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함.</li> </ul> </li> </ul>	완료 (기각)
4	서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산 공원 000 건축관련 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부터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원인 소유 임야에 00단지를 조성하고 00시설을 설치하였으나 00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시설증축과 00제조·가공시설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받아 재산상의 피해가 크므로 건축 바닥면적(527.68㎡)기준 2,638.4㎡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00체험학습장 운영허가를 요청한 사항으로</li> </ul> </li> </ul>	완료 (각하)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인은 00동 산130-3번지 등을 00공원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도시농업시설(00작업장 및 00특화사업단지)로 2014.5. 9.결정고시하고, 2020. 6. 25.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인 사항임.</li> <li>-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출 및 민사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의결·판결·재결 등을 받은 사항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함.</li> </ul>	
5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물 신축으로 소유권 변경에 대한 권리행사</b></li> <li>-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 소유 건물을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로 명의변경 요청한 사항이나 기증서와 기부약정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건축주 등 중요 기재사항이 모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로 되어있음.</li> <li>- 신청인이 기증인에게 수증인 변경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항과 현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소속 지회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수시지회는 변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각함.</li> </ul>	완료 (기각)
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동산 취득세 면제 불가에 따른 진정</b></li> <li>-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주택 보상금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부도로 등기이전을 못한 상황에 경매가 진행되었고 신청인이 최종 낙찰을 받아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임.</li> <li>-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감면 요건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각함.</li> </ul>	완료 (기각)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7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사업자 등록담당 공무원 업무 소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를 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물건을 매도하였으나, 등록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잃어버려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 ' 22.2.3.)했다는 서류는 접수된 내역이 없고 임대말소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매도 시( ' 22.2.5.)에 수리여부를 확인하고 매도를 했어야 하는 사항임을 주장</li> <li>- 신청인의 위반행위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 과태료 감경을 의견표명</li> </ul> </li> </ul> <p>⇒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수용(과태료 2분의1을 감경)</p>	완료 (의견표명)
8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 ○○리 ○○농장 신축으로 인근 토지소유자 피해사항 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토지와 경계부분 훼손된 담장 원상복구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 중인 사항으로 제외</li> <li>- 버섯농장 부지조성 중 소음, 분진 피해 및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교통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부지조성 공사 중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li> <li>- 신청인의 주택 및 농경지가 버섯농장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고 있었으나, 부지조성 시 성토를 하면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 추가설치 및 부지 계획고 조정 필요</li> <li>-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 등 피해예방에 대하여는 동일 사업자가 운영 중인 버섯 재배사를 확인한 결과 버섯재배 후 폐 톱밥 등은 처리업체에 유상 처리하여 냄새는 없었으며, 냉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섯농장 부지조성 및 건축으로 인한 피해 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과 의견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한다.</li> <li>② 00읍 00리 1113-4번지 토지 경계 옹벽 하단부에 돌을 2단 매설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li> <li>③ 00읍 00리 1113-1번지와 사업부지 경계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버섯농장 단지 계획 높이는 신청인 부(父) 주택 마당보다 낮게 조성한다.</li> <li>④ 냉방기 실외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은 버섯 재배사 남쪽에 설치하고, 방음재 등으로 덮어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한다.</li> </ul> </li> </ul> <p>⇒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수용(이행사항 점검 등으로 당사자간 민원해소)</p>	
9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토지매입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폐지로 인해 맹지로 전락한 신청인의 토지(00동 273-10, 172㎡)를 피신청인이 매입 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li> <li>- 신청인은 2019년 동일한 내용으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재신청한 민원으로 신청인은 그동안 피신청인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신청을 하였음.</li> <li>- 해당 민원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폐지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일지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청인의 재산적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제(매입) 방법을 찾지 못한데 있어</li> <li>- 피신청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계획) 및 같은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매입할 것을 의견표명 함.</li> </ul> </li> </ul>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불수용(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해당 토지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취득 시 민원 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은 불가)	
10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부지 불법경작 조치 및 주민쉼터 설치 요청</li> <li>- 00동 775번지 사유지(나대지)에 인근 주민이 장기간 불법 경작을 하면서 농막과 출입문을 설치해 주민 통행 방해가 되며, 00동 1통은 정자 및 경로당 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쉼터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에 정자 설치를 요청한 사항으로</li> <li>- 피신청인은 00동 775번지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불법 경작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토록 하고, 미이행 시 같은 법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안내</li> <li>- 정자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마을 대표자 및 해당 주민센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안내</li> </ul>	완료 (심의안내)
11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인근 오폐수 방류로 아파트 주민 고충</li> <li>- 인근 오·폐수 방류 원인 규명, 1차 민원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미흡하고 재차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요구한 내용으로 관련 부서와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수관로 기능 회복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해결</li> <li>▶사 업 량 : 하수관로(D500mm) 설치 L=20m</li> <li>▶사 업 비 : 30,000천원</li> <li>▶사업기간 : 2022.11~2022.12.</li> </ul>	완료 (심의안내)
12	한○○ 외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예정지 제외 요청</li> <li>- 00공공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관련 마을이장 등 일부 주민이 당초 00리 1131-15번지(이하 A지역)에서 1192-2번지 외 1필지(이하 B지역)로 실시설계 변경 중인데, 마을소유 부지로 변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있는바 처리장 시설 부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인접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 12명 연명으로 고충민원 신청</li> </ul>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공공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여 가막만 등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민간이 선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혐오시설 입지 반대에 따른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꼭 필요한 사업임.</li> <li>- 공공하수처리장 건설부지는 토지보상법 및 민간투자법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공유지에 한정하지 말고 마을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에서 재검토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정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 함.</li> <li>- 마을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부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여수시에서 마을과 협의하여 매입하게 되며, 현 단계에서는 매각에 대한 절차 이행이 아니므로 기각함.</li> </ul>	
13	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하수처리장 이전 및 개선요청(소음·악취 등)</li> <li>- 00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음 및 악취 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시설 개선 및 이전 요구한 내용으로</li> <li>- 하수처리 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지 14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소음 및 악취 처리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우선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설비 및 탈취팬 등 기계 장치 가동에 따른 소음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함.</li> </ul>	완료 (의견표명)
14	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 대부관련</li> <li>- 신청인이 00면 00리 819-2번지 공유재산 대부신청 불허에 따른 민원으로 인근 주민의 임대신청 토지의 민원제기 사유와 타인 임대여부 및 피신청인이 측량을 한 목적에 불만을 가진 사항으로, 궁극적인 목적인 해당 지번 전체에 대해 대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li> <li>- 00리 819-2번지는 현재 누구와도 대부계약 체결한 바 없고, 해당 토지 일부는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신청인은 명확한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를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음을 안내함.</li> </ul>	완료 (의견표명)

연번	신청인	민원내용 / 처리결과	완료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00리 819-3번지 통행로 부분은 대부면적에서 제외하고, 819-2번지도 통행로를 제외한 면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도록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함.</li> </ul>	
15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예산 사업 변경 추진(마을안길사업)</li> <li>-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 건에 대한 사업부서 사업규모나 장소 임의변경 추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사항이나, 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 신청하여 여수시로 이송되어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함.</li> </ul>	완료 (각하)
16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로 이전된 토지소유권 이전 반환 요청</li> <li>- 부친소유 토지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여수시로 소유권 이전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 상의 하자로 이전된 토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li> </ul>	추진중

□ 이첩·취하 민원 내역

연번	민원제목	처리사항	비고
1	특조법으로 조상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	이첩 (여수시)	
2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정보공개 및 경찰 주둔여부 확인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3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대기시간 단축 요청	이첩 (여수시)	
4	장애인복지관 입구 주차장 차단봉 설치	이첩 (여수시)	
5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6	논밭 중금속 검출에 따른 피해조사 요청	취하	

□ 상담완료 민원 내역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	장애인 보도블록 정비 요청	도로시설관리과 전달 및 정비 요청
2	조상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타인이 등기 하려하니 바로잡아 줄 것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3	관광호스텔 완공 후 동 구분이 잘못되어 사용 승인 거절 됨	허가민원과 전달 및 조치 요청
4	OO펜션과 OO폴빌라 사이 매립지에서 바다 방면으로 길이 조성되면서 문제 발생	해양항만레저과 상담 및 민원접수 안내
5	시에서 해안도로 개발 시 문중땅을 동의없이 편입, 훼손했으니 인근 국유지와 교환 요청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양항만레저과 상담 안내
6	시 도로공사 시 대문, 대문상판, 담을 헐었으니 원상복구 요청 및 방문, 부역문이 틀어져 불편하니 해소 바람	지적 측량 결과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여부 안내
7	본인(시인, 작곡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지역 행사나 버스킹에 공연기회 제공 요청	문화예술과 상담 안내
8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하여 신고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 호소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9	여순사건 유족 신청했으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	심사 진행 중으로 시간 소요 안내
10	건물 매도 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지급하기로 합의서 작성했으나 지급받지 못했으니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청	사인간 계약으로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안내
11	여수산업단지에 야적장 허가신청을 했으나 조례에 부합하여 불허가 처분됨. 인근 시와 비교하면 부당한 점 있으니 조례 개정 요청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12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이전을 하려는데, 이의신청 상속인이 있어 신원공개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등기 이전이 될 수 있게 공개 요청	민원지적과 상담 후 민원 접수 안내

연번	민원내용	처리사항
13	장미철 향일암 입구(현, 관광안내소 앞) 하수구 덮개가 경사져 관광객 다수가 미끄러지니 미끄럼 방지조치 요청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14	조업금지구역 근해형망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	수산경영과에 관련내용 전달 후 민원인에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
15	옆 농지 성토 후 중금속 유입으로 농작물 피해 발생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16	미평 산림욕장의 비 가림 시설 미비로 유아들의 숲 체험활동 지장 초래	산림과 확인 후 비가림시설 계획 중임을 안내
17	임차 중인 공유토지 도로포장 원상복구 요청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18	문수초 후문 상점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통행에 지장 초래	도로시설관리과 지도단속 요청 후 해결
19	시유지 매각대상관련 매각시기 및 대부가능 여부 문의	회계과와 돌산읍 확인 후 상담해소
20	대형폐기물 수거 미흡으로 주민불편 초래	도시미화과 확인 후 상담해소
21	경남A 2차 입구에서 부영A 3차 구간 도로 확장 요청	도로과 확인 후 안내하고 상담해소
22	미관광장 교차로 조경개선 및 활용에 대한 의견	공원과 확인 후 안내하고 상담해소
23	시유지에 간이체육시설 설치 요청	주민참여예산 등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24	배수관 매설로 인한 이웃 간 불화	허가민원과와 합동으로 현장간담회 실시 후 이웃 간 원만한 해결 유도하여 해소
25	도로변 공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요청	도시계획과, 교통과 확인 후 안내하고 상담해소
26	여수엑스포역 앞 관광버스 승하차구역 주정차 단속시간 개선 요청	일반민원(시민공감담당관) 접수 안내
27	시에서 부친소유 토지를 기부체납 형식으로 부당하게 이전하였다며 반환 요청	관련자료 구비하여 재상담 안내

## 2 시민옴부즈만 활동

### 가 2021년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 근 거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8조
- 시 기 : 2022. 2.
- 대 상 :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시민
- 방 법 : 공고, 시 홈페이지 게재, 책자 제작(250부) 및 배부

여수시의회 보고(2. 15.)



## 나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여수시 '우수기관 선정'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2. 25.)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민원옴부즈만부문] 국민권익위원장 표창(2. 25.)



## 다 2022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운영시기 : 2022. 10. 25. ~ 12. 15.(매주 화·목 13:30~17:00)
- 운영방법 : 읍·면·동 방문 상담
- 상담관 : 2명(시민옴부즈만)
- 주요내용 :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고충민원 사후관리 현장 방문 등
- 운영일정

구분	읍·면·동 상담일
10월	25일(돌산읍) / 27일(국동, 대교동, 월호동)
11월	8일(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 10일(여서동, 문수동) / 15일(총무동, 광림동, 서강동) / 17일(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 22일(화양면, 화정면) / 24일(여천동, 주삼동) / 29일(쌍봉동, 시전동)
12월	1일(묘도동, 삼일동) / 6일(울촌면) / 8일(소라면) / 13일(남면) / 15일(삼산면)

### □ 운영결과

총 접수건수	고충민원	현장해결	상담안내(일반민원 이첩)
24건	5건	7건	12건

\* 도로·교통 9건(38%), 주민편의시설 5건(21%), 도시미화·환경 3건(12.5%), 공유재산 3건(12.5%), 기타 4건(16%)

#### ◆ 미담사례(배수관 설치로 인한 이웃 간(3가구) 분쟁 발생 해결)

- 시인간 해결할 사항이나, 배수로 관련으로 평소 가까이 지내는 이웃 간에 불화가 발생한 사안으로 시 관계부서 공무원, 이웃 주민(3가구), 옴부즈만이 함께 현장간담회 실시하고 중재하여 해결



10/25 돌산읍



11/10 여서동



11/22 화양면



12/13 남면

## 라 타 시·군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아산시(7. 5.)



강진군(7. 22.)



순천시(12. 6.)



## 마 시민옴부즈만 활동사항

고충처리위원회 전남권 세미나 참석(6. 17.)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참석(7. 20.)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토론회 참석(10. 20.)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역량강화 교육(11. 3.)



특조법 관련 민원현장(4. 21.)



도로개설 관련 민원현장(5. 9.)



공원구역 제조시설 등 설치 민원현장(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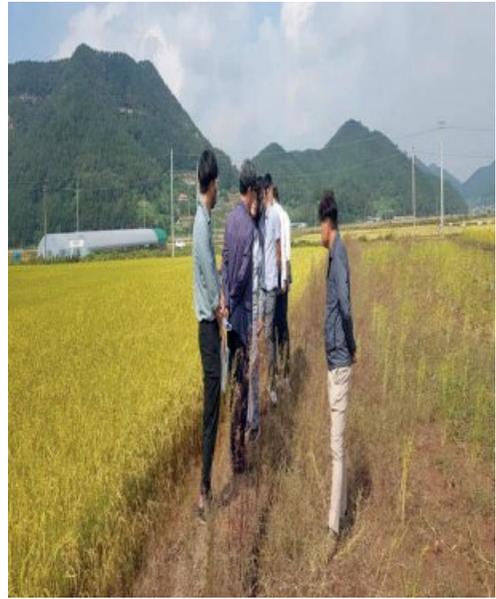
건축관련 민원현장(8. 24.)



공유재산 매입 요구 민원현장(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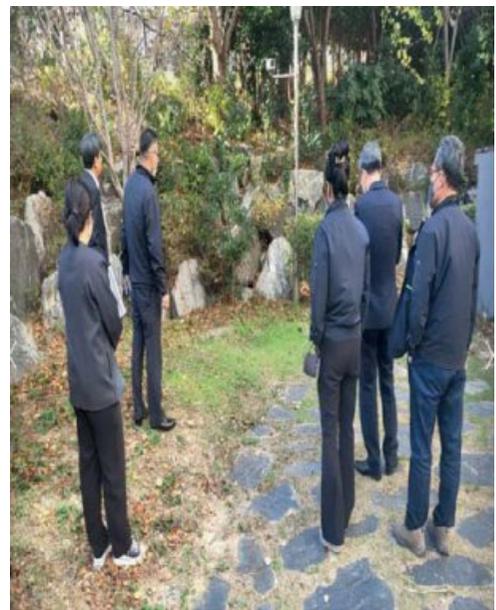
농지 중금속 오염 민원현장(10. 5.)



공유지 불법 사용 민원현장(11. 4.)



오폐수 방류 민원현장(11. 4.)



하수처리장 예정지 민원현장(11. 30.)



하수처리시설 노후 민원현장(12. 13.)



공유재산 대부관련 민원현장(12. 13.)



하수처리장 설치관련 민원현장(12. 22.)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6. 23.)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7. 5.)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10. 4.)



고충민원 관계자 회의(12. 22.)



### 3 시민옴부즈만 홍보

#### 가 여수시 홈페이지



#### 나 배너 및 리플릿 제작·홍보



## 다 언론보도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권익 지킴이 역할 ‘톡톡’

25일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서 우수기관 선정 ‘기관표창’ 수상 ... 5년간 고충민원 310건 다뤄

전규하 기자(여수) | 기사입력 2022.02.28. 18:10:31

지난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전남 여수시가 ‘시민옴부즈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옴부즈만이 상시 근무하며 고충민원의 상담, 접수, 조사, 처리절차를 직접 수행해 시민 권익보호와 고충해결 등 평가 분야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고 역할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한 여수시 옴부즈만은 지난 2017년 8월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출범해 그동안 고충민원 310건을 접수해 100건을 직접 조사하고 26건 시정권고 중 19건이 수용되는 등 시민권익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기재 시민옴부즈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한 분의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뉘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의 날’은 2월 27일로, 조선시대 태종이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교서를 내린 1402년 2월 27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 여수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시민 고충 현장에 서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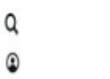
여수시 공보담당관 (navv33@korea.kr) | @조희수 22



- 여수소식
- 진재
- 기획재정
- 안정행정**
- 사회복지
- 경제해양수산
- 건설교통
- 보건소
- 농업기술
- 산단환경
- 중경문제교육
- 생태수도
- 도로·차량
- 읍면동
- 기타

- 시정뉴스
- 시정소식지

2022-10-17 14:54 (월)



## 10월 25일부터 읍면동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 시정소식지

다보기+

본문 12/25 2022 10/17

시민옴부즈만



여수시(시장 정기영)가 10월 25일부터 27개 읍면동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듣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상담예약제로 운영하며, 옴부즈맨 2명과 담당공무원 1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병문해 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시는 10월 25일 들산읍에서 시작해 12월 15일 삼산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

시정 관련이나 단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제3기 김기재 대표 옴부즈맨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어겠습니다"라는 옴부즈맨 구호처럼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맨'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출범 이후 103건의 민원을 접수해 10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다.

## 여수인터넷뉴스

### 여주시,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시민 고충 현장에서 듣는다

10월 25일부터 읍면동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 운영

기사입력 2022-10-17 14:41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10월 25일부터 27개 읍면동 고충 민원을 현장에서 듣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은 상담예약제로 운영하며, 옴부즈만 2명과 담당공무원 1명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시는 10월 25일 돌산읍에서 시작해 12월 15일 삼산면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미처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 상담 접수도 가능하다.

시정 관련이나 단순 민원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제3기 김기채 대표 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어겠습니다라는 옴부즈만 구호처럼 시민들을 위한 옴부즈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주시 시민옴부즈만'은 2017년 8월 출범 이후 109건의 민원을 접수해 10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다.

# III

##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
2. 심의안내
3. 기각
4. 각하



## 1 의견표명

### 임대사업자 등록담당 공무원 업무 소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2022년 2월 3일 여수시(허가민원과)에 관례대로 직접 공동주택임대사업 관련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민원신청 서류가 누락되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 2022년 2월 3일 허가민원과에 해당 민원서류를 제출하였다며 그 근거로 시청에 출입한 사실과 당일 민원인이 회사직원과 통화한 내용,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이력 등을 근거로 공무원이 서류를 받고 분실로 인해 발생한 건이니 담당 공무원을 조치해 주고 민원인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요구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이 2022년 2월 3일 당시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접수된 내역이 없어 사무실내 해당 민원서류를 2차례 찾아봤으나 발견하지 못했고 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등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확인 할 수 없음.
- 당시 허가민원과에서는 민원신청서를 수합하여 총 4건을 민원실에 접수하였으나, 접수목록에 없었음.
-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말소 신청서 제출 후 수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임.

##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임대 중 부기등기 된 \*\*아파트 \*\*동 \*\*호를 2015. 1. 16. 1억6,000만원에 매입 후 2022. 2. 5. 2억8,000만 매매(등기접수일 2022. 3. 4.)
-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신청인의 2022. 2. 3. 시청 출입내역
  - 신청인 소유차량 (00주 0000) 입차 14:33, 출차 14:55
  - 말소를 위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대장열람 14:50
-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여수시청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호소 합니다」 민원신청(여수시 이송민원처리) : 2022. 7. 14.
- 신청인 감사원 민원(여수시 이송민원처리) : 2022. 7. 20.
  - 임대사업자 등록담당 공무원 업무소홀에 따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취소
- 신청인은 2022. 7. 1. 부기등기를 하면서 물건 하나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 주무관에게 2022년 1~2월에 시청에 방문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봤다고 말했고, \*\*\* 주무관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평소 신청인을 자주 봤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 될 가능성이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2. 2. 3. 방문 시 제출했다던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음.
- 신청인은 2022. 02. 03. 14:39:50, 2022. 02. 03. 14:43:29에 여수시 학동 \*\*, \*\* 인근에서 각각 8초 통화했음을(LG U+ 통화내역. \*\*점 발행) 확인함.

## 3 판 단

### 가.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 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위반행위자가 사업여건의 악화 및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판단내용

- 신청인은 지방세 납세의무에 있어 그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납세자임. (20\*\*납세자표창 제20\*\*-21호 전라남도지사)
- 부기등기중인 부동산을 말소하기 위해 시청에 방문한 정황은(신청인 소유 차량의 입·출차 상황과 부기등기 부동산 말소를 위한 임대아파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대장 확인) 있으나 확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했다는 인과관계가 정황만으로 입증하기에는 미약함.

## 4 결 론

- 신청인의 위반행위의 동기에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가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어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에 대해 감경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수용(과태료 2분의 1을 감경)

## ○○농장 건축으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 1 민원개요

- \*\*읍 \*\*리 \*\*농장 건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경계 돌담 원상복구.
-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빗물배수, 소음, 악취, 분진)

### 2 사실관계

#### 가. 부지조성

- 위 치 : 여수시 \*\*읍 \*\*리 1112번지
- 지적/지목 : 1,425㎡ / 답
- 사업개요 : L형옹벽(H2~2.5) L=120.8m, PE이중벽관(D300) L=34m  
U형측구(0.3\*0.3) L=73m, 콘크리트포장 A=740㎡

#### 나. 건축개요

- 건 축 주 : 여수시 \*\*읍 \*\*길 \*\*법인 (주)\*\*
- 사업규모
  - \*\*사 1층/2동, 건축면적 525.4㎡, 연면적 525.4㎡
  - 관리사 2층/1동, 건축면적 36㎡, 연면적 75.83㎡
- 주 용 도 : 동식물 관련 시설

### 3 판 단

#### 가. 판단내용

- 신청인 토지와 경계부분 훼손된 담장 원상복구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사 중인 사항으로 금번 처리에서 제외
- \*\*농장 부지조성 중 소음분진 피해 및 중장비 통행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에

대하여는 부지조성 공사 중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

- 신청인의 주택 및 농경지가 \*\*농장보다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배수가 잘 되고 있었으나, 부지조성 시 성토를 하여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시설 추가설치 및 부지계획 조정 필요
-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 피해 예방에 대하여는 동일사업자가 운영 중인 \*\*재배사를 확인한 결과 \*\*재배 후 폐톱밥 등은 처리업체에 유상 처리 하여 냄새는 없었으며, 냉방기 실외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결론

- \*\*농장 부지조성 및 건축으로 인한 피해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의견표명 함.
  -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읍 \*\*리 1113-4번지 토지 경계 옹벽 하단부에 돌을 2단 매설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 \*\*읍 \*\*리 1113-1번지와 사업부지 경계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농장 단지 계획 높이는 신청인 부(父) 주택 마당보다 낮게 조성한다.
  - 냉방기 실외기 등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은 \*\*재배사 남쪽에 설치하고, 방음재 등으로 덮어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기후생태과,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수용(이행사항 점검 등으로 당사자 간 민원해소)

##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토지 매입 요구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1994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동 2\*3-10, 172㎡를 제외하고 건축을 한 후, 보상만을 기다려 왔는데 2002. 1. 28.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시켜 보상도 안 되고, 본인소유의 토지는 맹지로 전락되어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바 여수시가 토지매입 요구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해당 사유지는 1994년\*\*목욕탕에서 분할된 토지로 2002년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라 \*\*목욕탕과 인근 사유지에 둘러싸인 맹지임.
- 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해당 토지만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취득 시 민원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은 불가함.

지방자치 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4조(취득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 한 경우

- 아울러, 행정재산 활용계획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사유지 매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94. 3. 4. 여수시 \*\*동 2\*3-4번지(분할이전지번) 답 933㎡를 매수하여 1994. 5. 10.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현 2\*3-10번지, 답 172㎡, 신청인의 토지)을 제외한 2\*3-4번지, 답761㎡(2\*3-4번지에서 분할)에 목욕탕을 건축하였고,

- 피 신청인이 2002. 1. 28.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시킴으로서 신청인의 토지가 사방이 막힌 맹지로 전락함.
- 신청인이 건축한 목욕탕은 \*\*로(232-8, 접해있고 \*\*아파트,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라 신청인의 토지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목욕탕 건축부지가 되었을 것이고 목욕탕 앞 주차장 면적이 172㎡ 만큼 더 확보되어 목욕탕으로서 가치가 더 상승했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이중으로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이다.
- 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및 토지 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다음과 같다.
  - 2004. 9.13. 도시계획시설 재결정 요구
    - ⇒ 주변 환경과 주변 도로망의 연계성, 지역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계획 시설(도로법) 정비 시 검토하겠음.
  - 2007. 1. 26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 편입 토지 소유자 80% 이상 동의 필요
  - 2007. 3. 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 제출
    - ⇒ 도시계획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 토지매수가 어려움.
  - 2011. 3. 4 주민 편의 시설로 이용해줄 것을 요청
    - ⇒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
  - 2011. 12. 28. 미평동장이 도시계획과에 주차장, 공원조성 건의
  - 2012. 6. 8.감사원에 청원서 제출
    - ⇒ 동네 체육시설 타당 의견
- 피신청인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자체 검토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안, 동네체육시설 설치
    - 매입토지 : 3필지 337㎡ 매입예정가 171,725천원
    - 사업비가 적게소요되나, 진입 가능한 토지 일부매입이 불확실(272-2, 273-5)
  - 제2안, 도로개설
    - 매입토지 6필지 673㎡, 매입예정가 43,1037천원
    - 사업비 증가, 유사 민원 발생 예상
  - 제3안, 공원조성
    - 매입토지 3필지 1,230㎡, 매입예정가 507,952천원

- 환경 개선 효과는 있으나 사업비 증가 및 유사민원 발생 예상

※ 관련법 검토 : 현재 97헌바 판결 (1999. 10.21.)

결정요지

1.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 신청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과 폐지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 현재 결정요지에 의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를 보상해야 마땅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 공익사업의 선정 및 타당성, 주변 토지의 매수, 시설 및 공사비의 증가 곤란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신청인의 토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도로)이 폐지(2002.1.28)됨에 따라 매수 청구 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취득가능
  - 같은법 제3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의 “관리”란 같은법 제5조 제3항에서 행정 재산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함으로 사용목적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매입 후 향후 \*\*목욕탕(1994년 신축)의 재건축 및 용도 전환 개발 시 토지의 여건상 신청인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바 그때 처분이 가능한 점
  - 취득금액과 토지면적이 작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외 됨으로 취득이 수월

### 3 판 단

#### 가. 판단내용

- 이 건은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및 폐지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는 바 맹지로 전락한 신청인의 토지(\*\*동 273-10 번지, 172㎡)를 피신청인이 매입 해줄 것을 요구한 건으로서,
- 그동안 피신청인을 비롯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의 답변과 피신청인의 자체검토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폐지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일지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신청인의 재산적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기관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제(매입)방법을 찾지 못한데 있고,
-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지정(폐지)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

### 4 결 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3항의 일반재산으로 매입할 것을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불수용

◆ 소관부서 : 회계과

- 의견표명에 대해 관련부서 불수용(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해당 토지만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라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취득 시 민원 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입은 불가)

## ○○공공하수처리장 건설부지 예정지 제외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선정 관련 마을이장 등 일부 소수 주민이 당초 \*\*리 1131-15번지(이하 A지역)에서 1192-2번지 외 1필지(이하 B지역)로 실시설계 변경 중인데, 마을소유 부지로 변경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문제가 있는바 처리장 시설 부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인접 토지소유주 및 지역주민 12명 연명으로 고충민원 신청
  - 당초 시에서는 A지역으로 처리장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주민설명회에서 마을소유 부지가 포함된 B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여 분쟁 발생
  - 2020년 10월경 B지역에 100평 규모로 설치한다고 잠정 확정해 놓고 시에서는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장에게 주민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려고 하고 있으며, 마을소유 토지는 마을총회에서 매각처분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장 및 임원 몇 명에서 매각하려 하고 있고 시는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새마을회 소유부지 제외 요청
  - B지역 주변은 민간인이 \*\*마을 조성 등을 위해 해변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환경오염 등 위해요소가 없는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지에 하수처리장이라는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혐오시설이 오면 지가하락 등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잔여 토지는 맹지가 됨.

####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 결여
  - 「여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장에게 여론수렴 요청하였으며, 주민동의서 징구, 총유재산인 마을소유 토지의 처분 등은 마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임.
- 원안부지와 설계변경 부지 간 환경적 요소 비교에 따른 선정 과정

- 당초 A지역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마을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민가에서 가까워 반대 민원이 있어 설계변경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을 민가에서 멀고 외진 곳에 설치 요청한 점을 볼 때 B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관련
  -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사항은 현재로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공사 후 상호간에 검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사실관계

### 가. 사업규모

- 사업명 :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 위치 : 여수시 묘도동, 돌산읍 등 8개 읍면동
- 사업비 : 105,013백만 원
- 사업기간 : 2022. 6. 10. ~ 2025. 6. 9.(운영기간 - 운영개시 후 20년)
- 사업시행자 : 여수\*\*물(주)

###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개요

- 위치 : 여수시 \*\*마을
- 사업규모 : 공공하수처리시설 100m<sup>3</sup>/일, 오수관 5.42km, 맨홀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227개소
- 사업비 : 50억 원

### 다. 추진일정

- 2017. 02. 10. : 제안서 접수(\*\*건설(주) → 여수시)
- 2020. 04. 28. : 제3자 제안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접수 / 여수\*\*물(주)  
/ 대표사 \*\*건설(주)
- 2021. 08. 0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2. 05. 25. :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라. 사실관계

- 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하여 하천 및 가막만 등 방류수역의 오염방지 및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건설은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부지는 기본설계 시 토지 매입이 용이한 국유지(A지역)를 선정하여 2017년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제3자 제안 공고에 따른 사업제안서 접수(2020. 4. 28.)시 동일 장소를 제출하여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2022. 5. 25.)를 득한 후, 2022. 6. 10. 공사 착공하였음.

## 3 판 단

### 가. 관계법령

- 「민간투자법」
  -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제15조)
  -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능(제20조)

### 나. 판단내용

-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위치 변경 관련
  - 신청인은 하수처리장 건설 위치가 당초 시 공무원이 A지역으로 확정되었다 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마을소유 부지가 포함된 B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하여 분쟁발생 주장
  - 피신청인은 당초 A지역은 여론수렴 과정에서 마을주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민가에서 가까워 반대 민원이 있어 설계변경 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하수처리장을 민가에서 멀고 외진 곳에 건설 요청한 점을 볼 때 B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이장은 A지역에 대하여 마을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위치는 주민이 없는 외곽지역인 B지역에 설치해야 함을 주장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인 \*\*리 1120-3번지를 제안하였으나 그곳 또한 인근 토지주 민원이 있어 가능성 배제(이장, 시)
- 사업부지를 선정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토지수용이 가능함에도 국공유지만 찾다 보니 적정부지 선정에 제약
- 마을소유 토지 제외 요청 관련
  - 신청인은 마을소유 토지는 마을총회에서 매각처분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장 및 임원 몇 명에서 매각하려 하고, 시에서는 묵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
  - 피신청인은 마을소유 토지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부지에 포함될 경우에 마을재산의 처분은 마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 4 결론

- 마을공공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여 가막만 등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민간이 선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혐오시설 입지 반대에 따른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꼭 필요한 사업임.
- 공공하수처리장 건설부지는 토지보상법 및 민간투자법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국공유지에 한정하지 말고 마을대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에서 재검토하여 적절한 장소를 선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함.
- 또한, 마을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부지로 확정 된다면, 이후 여수시에서 마을과 협의하여 매입하게 되며, 현 단계에서는 매각에 대한 절차 이행이 아니므로 기각처리 하고자 함.

## 5 처리결과

◆ 소관부서 : 하수도과

-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중

# ○○면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원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면 \*\*마을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음 및 악취발생이 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우학리 마을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인근에 학교 및 주거지가 인접하고 있음.
- \*\*마을 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 개선 요구

### 나. 피신청인 주장

- 하수처리장은 사회통념 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처리장 부지 선정이 쉽지 않으며 대체부지 선정 시 또 다른 추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처리장 이전은 국고보조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전에 따른 용지 보상비를 비롯한 처리시설 및 펌프장, 오수관, 방류관로 이전 등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마을 하수처리장 이전은 불가능 하지만, 기술진단 및 시설물 점검을 통해 추후 악취 및 소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 2 사실관계

- \*\*마을 하수처리시설 현황

위 치	여수시 **면 **리 2*1-8
공 법	DBS 공법
처리용량	180㎥/일
부지면적	845㎡
처리구역면적	59ha
가동개시일	2008. 1. 15.

□ 탈취설비 사양

항 목	규격 및 형식
형 식	미생물탈취기
용 량	10m <sup>3</sup> /min
압 력	250mmAQ
부대설비	히타, 순환수탱크 및 펌프2(1)탈취팬 2(1), 제어반

□ 신청인이 주민불편 숙원(불편) 개선을 요구한 민원은 다음과 같다.

- 2022. 3. 23. \*\*마을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요구-(관계부서 답변)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

□ 민원원인

- 마을하수처리장이 14년 동안 사용개시 중이며 노후화로 인한 소음 및 악취의 처리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

□ \*\*마을 하수처리장의 방류 수질

- 2022년 1월~11월 방류수 수질데이터 평균  
→ 수온:21.3, PH: 6.8 , BOD\*: 6.4, TOC:10.3, SS: 7.2,  
T-N:11.960, T-P: 1.283, 총대장균군: 107

\* BOD :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호기성(好氣性) 박테리아가 일정기간(보통 섭씨20도에서 5일간) 동안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산소량을 ppm(백만 분율)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의 오염이 많이 진행되었을수록 유기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박테리아 분해에 소비되는 산소량도 증가한다. 즉 BOD가 높을수록 오염이 많이 진행된 물이다. 1ℓ의 물에 1mg의 산소가 필요한 것을 1ppm이라 하는데 일반적인 하천에서는 5ppm이 되면 자정(自淨)능력을 잃으며 10ppm을 넘으면 악취가 남.

□ \*\*마을하수처리장의 관리업체 상황

- 접근성이 어려운 섬 지역은 비상 시 즉시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가능한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법에서 정한 점검을 철저히 준수하여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겠음.

### 3 판 단

#### 가. 관련법 검토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대상 확대·강화(「하수도법」 제6조)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분뇨처리계획 포함
  - 도시기본계획, 댐건설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변경승인 제외대상 열거 방식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선
    - ※ 하수처리구역 포함 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라지는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 등과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변경승인 대상범위를 차등 규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대상〉

현 행	개 정 안
< 변경승인 제외대상 > 하수시설용량 20%미만 증설	< 변경승인 대상 > ○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변경, 신·증설, 계획 처리구역 변경 ○ 기타지역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 20%이상 증설, 계획 처리구역 면적 10%이상 확대

- 방류수 수질 기준(「하수도법」 제7조)
  -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 : 50㎥/일 이상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적용
    - 정화조 : 10인용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제외

구분	현행	개정안
오수처리시설	모든 시설 동일 : BOD, SS 20mg/l이하	- 50톤 미만 : 현행과 같음 - 50톤 이상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 BOD 10, COD 40, SS 10, T-N 20, T-P 2mg/l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 ※ 기존건물은 2012.1.1부터 적용
정화조	모든 시설 : BOD 제거율 50%이상	- 11인용 이상 : BOD 제거율 50%이상 ※ 10인용이하 : 기준 폐지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하수도법」 제2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74조)
  -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대행기관을 규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확대(「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
  -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수질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 해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3개 추가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 다205796 판결)
  - 운영관리단계에서 민간위탁 관리업체는 협약 상 의무위반이나 처리시설 운영관리 방법 및 적정 투입인력으로 처리장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위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공제해야 한다.

## 4 결론

- 「하수도법」 제5조에 의하여 공공하수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을 시작한 지 14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 된 점을 미루어 소음 및 악취 처리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적으로 악취제거를 위한 탈취설비 및 탈취팬 등 기계장치 가동에 따른 외부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과 악취관련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함.
  - ① 흡음재를 이용한 격실 제작 검토
  - ② 복합 악취를 제거 할 수 있는 악취 저감설비 설치
  - ③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 ④ 시설물점검 등 관리 강화방안 수립

## 5 처리결과

◆ 소관부서 : 하수도과

-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중

## 공유재산 대부 관련 민원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임대토지에 민원제기 사유
- \*\*면 \*\*리 8\*9-2번지를 타인에게 임대여부 및 측량을 한 목적

#### 나. 피 신청인 주장

- 주민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을 제기 한 바 있으며,
- \*\*리 8\*9-2번지는 현재 임대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 일부는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명확한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기 위해 측량을 실시하였음.

### 2 사실관계

#### 가. 공유재산 대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대부목적	계약일	대부기간
8*6-4	답	168	경작용	'22. 3. 4.	'22.3.6. ~ '22.3.5.
8*9-3	전	59	물건적치	'22. 3. 4.	'22.3.6. ~ '22.3.5.
8*9-2	전	43	기타(휴식공간)		

#### 나. 추진일정

- 2017. 02. 21. : 공유재산 대부 신청
- 2017. 03. 06. : 공유재산 대부 계약(2017. 3. 6.~2022. 3. 6.)
- 2022. 02. 15. : 대부계약(갱신) 신청
- 2022. 03. 04. : 공유재산 대부 계약(2022. 3. 6.~2027. 3. 5.)

#### 다. 사실관계

- 대부 신청 토지는 \*\*로 도로건설 당시인 1999년 매입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 3 판 단

#### 가. 판단내용

- 확인결과 \*\*리 8\*9-2번지는 현재 누구와도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측량결과 실지 통행로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대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리 8\*9-2, 8\*9-3번지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행로 경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를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음.
  - 대부중인 8\*9-3번지 일부 통행로 부분은 대부면적에서 제외하고, 8\*9-2번지 일부 통행로 부분은 대부 예정 면적에서 제외하고 대부
  - \*\*면 \*\*로에서 819번지를 진입하는 통행로는 2011. 12. 다음지도 로드뷰에서도 확인되며, 2022. 5. 민원해소를 위해 확장 포장하였음.

### 4 결 론

- \*\*리 8\*9-2번지는 현재 누구와도 대부계약 체결한 바 없고, 해당 토지 일부는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 신청인은 명확한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를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음.
-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리 8\*9-3번지 통행로 부분은 대부면적에서 제외하고, 8\*9-2번지도 통행로를 제외한 면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도록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함.

### 5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남면

- 의견표명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중

## 단전·단수 상인 생계대책 호소(2021년 민원)

### 1 민원개요

- \*\*시장의 대표이사가 단전·단수( '18. 4. 12.)한 이후 현재까지 20여명의 상인들이 생계가 차단된 채 농성 증으로 생계대책 호소

### 2 사실관계

#### 가. 사실관계

- 여수시장 양측대표 면담 및 분쟁 중개(4회) : '18. 8.~' 19. 5.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권고안 제시 : '19. 3.~6.
  - 관리비 및 공과금 원금을 납부하고 입점 후 연체이자는 분납
  - 관리비에 대한 상계처리에 대표이사가 요구하는 공과금을 공탁했고 회사측에서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시민 분쟁조정 위원회 권고안을 이행했다는 입장(여수시는 1,300만원 납부 이행요구)
  - 상인회는 대법원 가처분에서 오히려 상인회가 440만원의 관리비를 더 납부했고 공과금은 상인회를 통하여 납부하였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근거로 분쟁조정권고안은 회사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
  - 농성상인 중재안 수용 거부 : '19. 8.
  - 상인회 측 천막농성 시작( '19. 6. 3.~현재)/ 시청 조립식 뒤편에서 1,000여 일 농성

#### 나. 주식회사와 농성상인 분쟁 경과

- \*\*\* \*\*시장 개장( '10. 5.)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13. 9.)이후 분쟁 시작
  - \* 일부 상인들이 관리비 및 공과금을 비대위에 납부(주식회사 측 주장)
- 주식회사에서 한전과 여수시에 공과금 연체 시작( '13. 10.)
- \*\*시장 상인회 발족( '14. 2.)
- \*\*시장 단수조치(수도행정과) - 상인회에서 일부 납부 ( '14. 3.~)

- 주식회사에서 관리비 등 미납상인 대상 소송제기 및 승소
- 관리비 등 미납 상인 단전단수 조치( '18. 4. ~ 8.)
- 여수시장 양측대표 면담 및 중재( '18. 8. ~ '19. 5. 각 4회)
- 분쟁조정 시민위원회 운영 및 조정 권고안 제시( '19. 3. ~ '19. 6.)
- 양측모두 권고안 수용하기로 결정( '19. 7. 공문으로 회신)
- 양측 자료 제출을 근거로 미납 공과금 정리 통보( '19. 7.)
- 농성 상인회 측에서 수용거부( '19. 8.)
- 시장 관리자의 지정 현황

- 지정일자 : 2010. 6. 10.(신청일자 2010. 6. 7.)
- 지 정 자 : (주)여수\*\*\* \*\*시장 대표이사 장 응 선
- 지정시설 : \*\*시장 신축건물, 아케이드, 장옥, 화장실 12
- 지정근거 :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 3 판 단

#### 가. 생계대책 요구

- 영하의 날씨에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상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면담 시작으로 농성 해소 방안 모색
- 민원인과의 공감과 라포형성을 위해 농성 상인의 소리에 경청했고 여수시장,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 팀장, 시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시의원, 언론인, 종교계, 여수시 원로, 자문변호사 등 10여년 넘는 지역 최대의 고층 민원을 접하며 상호 윈·윈과 정서적 접근, 상호 존중과 겸손의 마음으로 대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주무부서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공감으로 중재

#### 나.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요구

-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하기 어려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9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여수시장은 임시시장 개설 가능(「전통시장법」 제14조제1항제5호, 「여수시 시장관리 조례」 제15조제3호)

## 4 결 론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신청인이 요청한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청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아 기각하고,
- 신청인의 생계대책 요청에 대하여는 10년 가까이 주식회사 측과 상인회가 분쟁과 갈등 속에 소송 등이 지속되어 온 지역의 대표적 고충민원으로 수많은 시간과 자원 지역의 관광이미지 재고 등에 영향을 주어왔음.
- 겨울 추위에 연로하신 상인도 있어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상인들에게 기본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과 「여수시 시장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임시시장 개설 방안을 통한 농성 상인회 생계문제를 해결하도록 의견표명 함.

## 5 처리결과 → 수용

◆ 소관부서 : 지역경제과

## 2 심의안내

### 도로부지 불법경작 조치 및 주민쉼터 설치요청

#### 1 민원개요

- \*\*동 7\*5번지 사유지(나대지)에 인근 주민이 장기간 불법경작을 하면서 농막과 출입문을 설치해 주민통행 방해
  - \*\*동 1통은 정자 및 경로당 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쉼터 및 친목도모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기 토지에 정자 설치 요청

#### 2 사실관계

##### 가. 부지현황

- 위 치 : 여수시 \*\*동 775번지
- 지적/지목 : 361㎡/답
- 현 이용실태 : 인근 주민이 텃밭 경작

##### 나. 조사내용

- \*\*동 7\*5번지는 현재 차량 및 보행자 통행 도로와는 별도의 토지이며,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임.
- 현지 확인결과 본 토지와 접한 구거에 암거를 시설하여 주민들이 보행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출입을 제한하였던 흔적은 있음.)

##### 다. 여수시 의견

- \*\*동 7\*5번지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불법경작하고 있어 무단점유자에게 「공유 재산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토록하고, 미 이행 시 같은 법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 마을대표자 및 해당 주민센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시행 검토하겠음.

### 3 결론(처리결과)

#### ◆ 소관부서 : 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 여수시에서는 불법경작자에게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정자설치 요구에 대하여는 관할 동사무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

## 00아파트 인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아파트 주민 고충

### 1 민원개요

- 인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원인 규명
- 1차 민원에 대한 구체적 조치 미흡
- 재차 피해 없도록 빠른 조치 원함

### 2 사실관계

#### 가. 현장확인 : 민원인, 하수도과, 시민옴부즈만 현장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2. 11. 4. 13:30~15:00
- 위 치 : 여수 \*\*동 \*\*아파트 단지 내
- 내 용 : 아파트 단지 내 누수지점(\*\*동 11\*1번지)
- 확인결과 : 여수시 관리 배수관로로 정비 필요

#### 나. 피신청인 의견

- 하수관로 기능 회복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조속히 하수관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 사 업 량 : 하수관로(D500mm) 설치 L=20m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22. 11. ~ 2022. 12.

### 3 결론(처리결과)

◆ 소관부서 : 하수도과

- 시에서는 해당 불편사항에 대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알림.

## 3 기각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해결 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면 \*\*리 6\*번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먼저 신청한 사람(박\*근)이 있어 신청인 조상 4대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자 이후 신청을 취소하였음.
- 이후 지정보증인(박\*준)에게 보증인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박\*성이 동명이인 임\*\* 아들 임\*\*수에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서 날인을 해주지 않고 있음.
- 토지대장상 소유자 임\*\*는 \*\*리 251번지에서 분가하여 6\*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신청인 집안과 임\*\* 집안이 혼인관계로 증조부(이\*근)부터 4대가 살았던 곳으로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결 요망

##### 나. 피신청인 주장

- \*\*리 6\*번지에 신청인 4대가 본적을 두고 있음. 박\*준 위원장 주장대로 임하\*\*는 임\*조의 아들로 대장상 소유자 임\*\*(1893년생)와 임\*조는 형제이며 \*\*리 251번지에서 분가했으며, 임\*조, 임하\*\*, 임\*래는 본적을 \*\*리 251번지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특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는 보증인이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 성실,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증인이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보증인은 보증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보증거부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강제할 수 없어 보증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 2 사실관계

### 가. 소유자

- 위 치 : 여수시 \*\*면 \*\*리 6\*번지
- 면 적 : 162㎡
- 소유자 : 미등기 토지(토지대장 : 임\*\*)

### 나. 사실관계

- \*\*리 6\*번지(대)는 미등기 토지(토지대장 : 임\*\*)로 현재 건축물이 철거되어 나대지이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철거 시기를 알 수 없음.
- 토지분 재산세는 전산화 이전 기록은 없으며, 전산화 이후에는 \*\*리 60번지 박\*성(2006~2007)→이\*례(2008~2009)→박\*근(2010~현재, 부산거주)이 납부(부→모→박\*근)

## 3 판 단

### 가. 관계법령

- 특조법에 따른 등기 이전 신청은 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장)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신청(「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1조)

### 나. 판단내용

- 지정보증인(박\*준) 의견
  - 본 토지는 임\*\*(189\*년생) 소유로 임\*\*수, 임\*열이 거주하였고 임\*래가 \*\*리 \*\*번지에 거주하는 박\*성에게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제적등본에는 신청인 조상이 본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 마을에서 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신청인 집안사람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보증서 날인을 할 수 없음.
- 확인서 발급 신청자인 박\*근(박\*성의 자)이 지번 착오라는 사유로 취하를 했

- 는데, 지정보증인 박\*준은 임\*래 가 박\*성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박\*준이 임\*\*수, 임\*열, 임\*래 가 6\*번지에 살았다고 주장하나, 이 두 분은 임\*\*의 형인 임\*조의 아들과 손자들로 \*\*리 251번지에 살았음.(제적등본)
  - 임\*\*(189\*년생)의 본적은 \*\*리 6\*번지이며, 장남 임\*연(192\*년생), 손자 임\*현(195\*년생), 손녀 임\*란(196\*년생)까지 \*\*리 6\*번지에서 출생하였음.
  - 이\*근(배우자 배\*심)은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장남 이\*조(189\*년생) 본적은 \*\*리 6\*번지이며, 손자 이\*용(194\*년생), 증손자 이\*수(197\*년생)까지 \*\*리 6\*번지에서 출생하였음.
  - 임\*\*와 이\*근 자손은 같은 시기에 \*\*리 6\*번지에 본적을 두거나 출생을 하였음.
  - 동명이인 임\*\*(191\*년생)와 묘인 임\*\*수는 이 건과는 관련이 없음.

## 4 결 론

### ◆ 소관부서 : 민원지적과

-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임\*\* 자손과 신청인인 이\*아 조상들이 같은 번지(\*\*리 62)에서 같은 시기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정보증인이 주장하는 임하\*\*, 임\*래 는 \*\*리 251번지에서 살았음.(제적등본)
- 보증인 박\*준이 주장하는 임\*\* 형의 손자(임\*래)가 박\*성(사망)에게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것은 계약서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박\*성의 자 박\*근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지번착오라는 사유로 취하하여 신빙성 결여됨.
- 따라서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결요구 건은 신청인과 임\*\* 집안의 소유권 관계는 자료 부족으로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하고, 또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 통보

## 임야 면적 감소사유와 보상 요구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토지거래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거래 후 주택건축을 위해 측량을 하려는데 토지면적 975㎡ 중 약200㎡ 정도가 감소되어 3,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함.
  - 경계에 있는 토지(산1\*7번지)와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
  - 지적재조사사업과 같이 (+)면적은 조정 금을 징수하고, (-)면적은 보상요구

#### 나. 피 신청인의 주장

- \*\*리 산15\*번지에 대한 최초의 임야도 및 임야분할 측량 결과 도를 검토한 결과 1918년 사정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산정되어 임야대장 면적이 많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함.
- 토지의 면적은 임야도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최초등록 당시부터 잘못 산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줄어야 하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등록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 할 수 있음.

### 2 사실관계

#### 가. 소유자

- 위 치 : 여수시 화\*면 \*\*리 산15\*번지
- 면 적 : 975㎡(임야)
- 소유자 : 여수시 화\*면 \*\*길 4, 김\*곤 외 1인

#### 나. 사실관계

- \*\*리 산15\*번지는 1918년 사정 당시부터 면적이 잘못 산정되어 임야대장 면적이 많이 등록되어 있음.

### 3 판 단

#### 가. 관계법령

- 등록사항의 정정(「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82조)
- 수량을 지정한 매매(「민법」 제574조)

#### 나. 판단내용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착오로 작성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는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으로, 토지면적 등록 시 착오로 실제면적 보다 많은 면적이 등록되었다가 면적이 줄어든 경우, 감소된 면적은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이지 공부상 감소된 면적 만큼 실제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그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지적공부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34702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2다65189 판결 등 참조)

-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는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됨으로써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바 감소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거나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92777 참조)

## 4 결 론

### ◆ 소관부서 : 민원지적과

- 판례에 따르면 토지면적 감소는 면적 등록 시 착오로 많은 면적이 등록된 경우로써 실제로는 그 대지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절차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하여 공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면적으로 바로잡은 것이지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당연히 취득하였어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며,
- 이 감소된 면적을 이 사건 토지와 관련이 없는 인근토지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는 지적 불부합 지구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 처리함.

## 신축 건물 소유권 변경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한 명의변경 요청

### 1 민원개요

- 여수시 \*\*로 68\*에 신축된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 건물 소유권이 등기 될 경우 소유권이 대한\*\*회 여수시지회에서 사단법인 대한\*\*회로 귀속되어 권리행사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 요청

### 2 사실관계

#### 가. 현 상황

- 기증현황
  - 수증인 :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 회장\*\*남
  - 기증자 : 주식회사 \*\*주택 대표이사 회장 \*\*호
  - 기증물 : 건물 연면적 998.69㎡ (302.1평)
    - :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 ① 사무실 2실 ② 교육실 2실 ③ 대회의실 1실 ④ 기타 부속시설
  - 기증일 : 20\*\*년 6월 8일
-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항
  - 건축주 :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
  - 주소 : 여수시 \*\*동 68\*
  - 허가일자 : 20\*\*. 4. 27
  - 건축구분 : 20\*\*-허가민원과-16\*호
  - 신청위치 : 여수시 \*동 6\*\*-2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1,329㎡
  - 지 목 : 대지
  - 용도지구 : 상대보호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면적 : 272.28㎡, 철근콘크리트구조

- 연 면 적 : 998.69㎡, 지상4층 ,1동
- 건폐율/용적률 : 20.49% / 75.15%
- 설계자/감리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훈
- 시 공 자 : (주)\*\*주택 \*\*환

## 나. 사실관계

- 민원 건축물은 20\*\*-허가민원과-신축허가-16\*호로 여수시 \*동 6\*\*-2 번지 의 2필지 20\*\*년 9월7일 등기부 멸실 후 상기 건축물 신축됨.(허가일자20\*\*.4.27.)  
‘21. 04. 27.
- 당초 대한\*\*회 여수시지회의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고 사용승인 과정에 건축주가 대한\*\* 여수시지회에서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로 변경됨.
- 건물 연면적 998.69㎡를 수증인을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 회장 \*\*남’ 으로 (주)\*\*주택 대표이사 \*\*호 기증서 전달함. ‘22. 06. 08.
- 달리는 국민신문고(여수시) 접수 ‘22. 06. 15.
-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이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로 변경될 경우 소유권이 사단법인 대한\*\*회로 귀속되어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사단법인이 아닌 종전의 대한\*\*회 여수시지회로 변경요구 취지의 민원

## 3 판 단

- 건축물대장은 1차적으로는 행정청이 건축물의 소유,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건축법」 제29조 1항), 그 자체가 건축물 소유권의 공시방법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일단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후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 변경을 이유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임의로 그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법 1996. 6. 18. 선고 96카합3461 판결)
- 기증서와 기부약정서에 수증인을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라고 명확히 한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추어 기증인의 법인(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수증인으로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부를 지정한 의미는 증여세 면세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신청인의 수증인 변경 요청 문의로 기증인이 거부한 점
- 향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소속지회로 협의에 의한 협조가 가능한 점

## 4 결 론

### ◆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 기증서와 기부약정서, 건축물 사용승인의 건축주 등 중요 기재사항이 수증인이 사단법인 대한\*\*회 여수시지회(회장 \*\*남)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효력을 위한 기증인의 수증인에 대한 변경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할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기증인의 수증인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에 근거가 없음으로 이를 기각함.

## 토지수용으로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감면)요청

### 1 민원개요

#### 가. 신청원인

- \*\*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주택보상금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매도인 부도로 등기이전을 못하였음.
- 상기 물건에 대해 경매가 진행 되었고 최종 낙찰을 받아 취득세 면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면제 불가 답변을 받았음.
- 매도인 부도로 부득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1년이 경과되었으며, 여수시 공공사업을 위해 협조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요청

#### 나. 피신청인 주장

-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음.
- 신청인은 2020. 9. 25. 보상금 수령 후 1년이 경과한 2022. 7. 4.에 경매 낙찰을 받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 2 사실관계

#### 가. 추진상황

- '18. 05. 10.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 '18. 09. 05. : 강제경매개시결정(2018타경\*\*78, '20.11.4. 취소기각결정)
- '18. 12. 06. : 강제경매개시결정(2018타경\*\*\*01, '21.8.11. 취하)
- '19. 04. 18. : 보상금 공탁(순천지법)

- '20. 07. 31. : 부동산 매매계약(여수시 \*\*2로 20, \*\*아파트 )
- '20. 09. 25. : 증액 보상금 공탁(순천지법)
- '20. 11. 11. : 강제경매개시결정(2020타경\*\*75)
- '22. 05. 03. : 강제경매개시결정(2022타경\*\*\*83)
- '22. 05. 10. : 강제경매개시결정(2022타경\*\*44)
- '22. 07. 04. : 경매 낙찰(신청인)
- '22. 08. 04.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 나.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여수\*\*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를 위해 여수시 \*\*동 1\*\*\*번지 일원 3,000㎡에 대해 여수시고시 제2018-\*\*호(2018. 5. 1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 1\*\*\*-3번지 토지 및 지장물(주택 등) 등에 대해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 2019.4.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며, 2020.9.25. 증액 보상금을 추가 공탁하였음.
- 신청인은 2020.7.3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전인 2018.9.5.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18.12.6. 강제경매개시결정 되었으며, 이후 2020.11. 1건, 2022.5. 2건 등 총 5건의임의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 되어 경매절차를 이행, 민원인이 2022.7.4.낙찰받아 2022.8.4.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

## 3 판 단

###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나. 판단내용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을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 신청인은 2018.5.10.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이후 2020.7.31. 대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20.9.25. 증액 보상금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탁하였음.
- 신청인은 2020.7.31.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교부받았다는 특약사항에 날인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인 2018.9.5.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18.12.6. 강제경매개시결정 된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였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조심2020지3439/2021.6.28)

## 4 결 론

### ◆ 소관부서 : 세정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감면 요건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각처리 함.

## 4 각하

### 00주공아파트 퇴거명령에 관한 이의제기

#### 1 민원개요

- 기초수급자인 어머니의 영구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

#### 2 사실관계

- 민원인은 모친의 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모친의 사망으로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2월말까지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민원인은 5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임.
- LH관리소장 면담으로 최근 현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입증서류 8항목 중 2가지 항목 확인 되면 승계가능 함을 확인 후 관련자료 확보
  - 주민등본, 고용보험, 건강보험고지서, 케이블TV 납부 고지서, 교통카드이용명세서, 카드명세서, 이동통신비 고지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실거주 입증 부족

#### 3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신청인의 민원이 LH\*\*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어머니의 아파트 승계조건과 실제 거주사실 입증이 확인되지 않아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나 추후 시민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LH\*\*주공관리사무소와 유기적 협조와 소통으로 민원인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관할)에 해당되는 기관 및 단체가 아니라 각하 결정함.

## ○○공원 건축 관련 진정

### 1 민원개요

- 2004년부터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민원인 소유 임야에 \*\*재배단지
- 를 조성하고 제다시설을 설치함.
- 이후 제다시설 면적이 협소하여 시설 증축과 녹차제조·가공시설 및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공원구역이라는 이유로 불가 처분을 받아 재산상의 피해가
- 크므로 건축 바닥면적(527.68㎡)기준 2,638.4㎡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녹차
- 체험학습장 운영허가 요청

### 2 사실관계

#### 가. \*\*공원 현황

- 위 치 : 여수시 \*\*동, \*\*동, \*\*면 \*\*리 일원
- 공원명 : \*\*근린공원
- 면 적 : 875,000㎡(공원시설 89,658, 녹지 및 기타 : 785,342)
- 최초결정일 : 1977. 4. 18.(건설부고시 제69호)
-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14. 5. 9.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 2020. 6. 25.
  - 사업기간 : 2020. 6. 25. ~ 2023. 12. 31.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공원과)
- 녹차 발 현황
  - 위 치 : 여수시 \*\*동 산\*\*0-3번지(\*\*근린공원 내)
  - 면 적 : 1.7ha(2004 ~ 2008년 조성)
  - 가설건축물 건축면적 : 194.58㎡ / 대지면적 1,126㎡

#### 나. 추진상황

- '08. 5. 14 : 한국전통차(녹차)가공 유통시범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기술보급과)
- '08. 5. 16 : 녹차 품질고급화 단지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농업정책과)

- '09. 07. 27 : 여수시와 신청인 합의서 작성(권익위원회 조사관 입회)
- '15. 01. 07 :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고충민원 제기
  - '15. 06. 09 : 처리결과 통보(권익위원회) - 적정면적 해제 입안 의견표명
- '17. 11. 09 : 행정소송 제기(1,2,3심 여수시 승소)
- '19. 11. 18 : 행정심판 청구(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 '20. 5. 7.)
- '20. 01. 13., 30. : 공원해제 여부 의견수렴 / 의견 미제출
- '21. 09. ~ : 직소민원 수차 제기(가공시설 건축면적 확보 필요)

### 다. 기초사실

- 신청인은 2004년경부터 여수시 \*\*동 \*\*번지 입야에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설건축물(건축면적 194.58㎡, 대지면적 1,126㎡)을 신축하여 2009. 1. 12.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허가없이 증축하여 실제 건축면적이 361.46㎡가 되었음.
- 2008년 한국전통차(녹차)가공 유통시범사업 보조금과 녹차 품질 고급화 단지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받아 제다시설 설치를 하였음.
- 신청인은 공원 내 가설건축물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자 고충민원 제기하여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2009. 7. 27.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피신청인은 \*\*동 산\*\*0-3번지 등을 \*\*공원 공원조성계획에 포함하여 도시농업 시설(녹차재배작업장 및 녹차특화사업단지)로 2014. 5. 9. 결정고시하고, 2020. 6. 25.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추진 중임.

## 3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1(공원시설의 종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도시농업의 정의), 같은법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 나. 판단내용

### □ 상급기관 민원제출(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인 토지에 녹차·제조 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바닥면적 기준 527.68㎡(대지면적 2,638.4)를 공원구역에서 해제 요구하는 고충민원 건에 대하여는, 공원과의 기능적 상충을 최소화하고 녹차 밭 운영에도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2015. 6. 8.)

### □ 민사소송

- 신청인은 2017. 11. 9. 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도시공원에서 제외해 주기로 약정 하였음에도 포함시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약 2,600㎡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310,386천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원심 2018.6.28., 항소심 2019.5.17., 상고심 2019.9.10.)

### □ 행정심판

- \*\*공원 내 신청인 소유 녹차 밭에 건물 200평 정도의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서 도시공원구역 해제 요청하는 행정심판 건에 대하여는, 각하 재결(2020. 5. 7.)

## 다. 결론

- 신청인의 고충민원은 동일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출 및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구하여 의결, 판결, 재결 등을 받은 사항으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결정함.

## 주민참여예산 사업 변경 추진

### 1 민원개요

- 정보공개청구(\*\*동) 2019. 2. 22. 제목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모집 선정 결과보고’ 가 2019 .6.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로 처음 건의자 김\*\*을 당시 주민자치위원장 박\*\*으로 바뀌었다.
- 이는 날조 조작된 위조 공문서 행사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동네 안길 재포장 예산 3,000만원을 본도로 4차선 중 3차선 덧씌우기 사업에 전용하였다.
- 집 앞 비탈면 정비 요청(구두요청)

### 2 사실관계

- 신속민원(1AA-2006-0862\*\*\*) 처리(접수 ‘20. 6. 29.) : ‘20. 6. 30.
  - 도로 및 옹벽 가드레일 등 안전조치 요청 / 도로시설관리과
  - ⇒ 도로 침하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안전진단을 통한 원인 규명 및 정비하겠음.
- 신속민원(1CA-2007-0552\*\*\*) 처리(접수 ‘20. 7. 20.) : ‘20. 7. 20.
  - 차량진입 금지 및 옹벽보수 요청 / 건설과, 도로시설관리과
  - ⇒ 마을로 진입하는 안길이므로 통행금지 할 수 없으며, 옹벽보수는 도로시설관리과에서 8월 중 추진할 예정임.
- 국민신문고 민원(1AA-2103-0879\*\*\*) 처리(접수 ‘21. 3. 22.) : ‘21. 3. 30.
  - 주민참여예산 관련(예산반영, 집행현황) / 도로시설관리과
  - ⇒ 2019년 6월 \*\*동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은 이면도로 및 본도로 포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이며, 도로 침하 및 균열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추후 도로침하 및 균열이 발생할 시 예산상황 및 도로상태 등을 고려하여 도로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 이송 민원(1AA-2016-0494\*\*\*) 처리(접수 ‘21. 6. 16.) : ‘21. 6. 2.
  -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전용 등에 따른 확인 및 조치 요청 / 도로시설관리과

- ⇒ 2019년 6월 \*\*동에서 신청한 주민참여예산(30백만원)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면도로) 및 도로 이용자들의 편익증진(본도로 포장)을 위해 2020년 본예산 편성 추진된 사항이며, 주차 밀림 방지턱 설치는 경사지 노상주차장 이용 시 차량 미끌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과에서 별도 추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과는 무관함.
- 감사원 심사청구 이송 민원(ICA-2108-0182\*\*\*) 처리(접수 ‘21. 8. 6.) : ‘21. 9. 13.
  - 주민참여예산 목적 외 전용에 따른 감사 요청 / 감사담당관
    - ⇒ 직권남용 직무유기 주장관련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실 없음.
    - ⇒ 정보공개 공문서 위조 관련 :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였으나, 공문서 위조 사실은 없음.
    - ⇒ 비인격적 대우 주장 관련 : 민원처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이 확인되어 교육 실시 등 합당한 조치 취함.
    - ⇒ 지반침하 주장 및 사업비 재집행 요구 관련 : 지반침하 및 들뜸 현상은 발생 하지 않았고 맨홀 및 전주 주변 쇄굴 지점과 침하구간은 보수완료, 향후 노면균열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수를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관련 공무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실시 및 신분상 처분 조치하였음.

### 3 판단 및 결론

◆ 소관부서 : 도로시설관리과, 한려동

#### 가. 판단내용

- 관련법령
  -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 집 앞 비탈면 정비 요구
  - \*\*동에 주민참여예산 신청 안내

#### 나. 결론

- 신청인의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2021. 6. 16.), 감사원 민원(2021. 8. 6.) 신청한 사항으로 여수시로 이송되어 관련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므로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에 따라 각하 결정함.



# IV

## 부 록

1.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민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의 “소속기관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2장 옴부즈만 기능·구성 등

**제3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5. 기타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옴부즈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5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대표옴부즈만과 부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할)** 옴부즈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권익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옴부즈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 스스로 제1항 또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1. 옴부즈만(또는 고충민원) 담당국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
  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전국교수협회의 추천 또는 지역 대학의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4. 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대상자를 복수 추천한다.
- 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은 읍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읍부즈만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의회에 위촉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읍부즈만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의안을 확정한다.

**제14조(자문기구)** ① 읍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읍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읍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대표읍부즈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읍부즈만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인사·처우 등과 관련한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읍부즈만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여수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옴부즈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2016. 12. 30.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10.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제3조(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조사)**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충민원,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위임·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의뢰받은 사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의회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과 타 기관의 옴부즈만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기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옴부즈만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6. 그 밖에 읍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읍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고충민원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읍부즈만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만은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읍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이해당사자가 「여수시 시민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읍부즈만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읍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읍부즈만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읍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읍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읍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및 그 소속기관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시장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합의의 권고)** ① 옴부즈만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ombudsman은 합의를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ombudsman이 주재한다.
- ③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소속기관등의 관계부서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합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조정회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ombudsman이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의 진행)** ① 대표ombudsman은 필요한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
- 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처리에 참여한 ombudsman이 한다.
- ④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의안의 제안 설명을 한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신청인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서의 경정)** ① ombudsman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 관련 법령·제도·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의 처리결과 통보 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ombudsman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ombudsman으로부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ombudsma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ombudsman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장은 ombudsman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ombudsman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및 고충민원의 처리·각하·이첩·종결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ombudsman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ombudsman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1조(감사의 의뢰)** ombudsman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 감사담당 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자문기구)**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선정, 위촉,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옴부즈만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자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희망부서 전보, 근무평정 등 인사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수당 지원)** ① 옴부즈만의 업무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활동 수당은 5급 공무원(15호봉) 봉급의 50퍼센트 상당 수준으로 하며, 근무 조건 및 수당 지급 지급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제1항에 따른 활동 수당 외에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18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등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7. 4. 7.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0.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